

●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8-29호

전파법 시행령 제6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4일

국립전파연구원장

## 전자파적합성 기준 일부 개정(안)

### 1. 개정이유

태양광 전력변환기, 프로그램 동작 제어기, 보호 계전기의 전자파 영향을 최소화 하고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국제표준을 수용하여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국제표준을 수용하여 프로그램 동작 제어기에 대한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명확히 규정(안 제5조, 별표 2)

나. 고출력 태양광 전력변환기 등의 전자파 환경을 고려하여 75 kVA 이상의 전도성 방해 기준을 완화(안 제6조제1항, 별표 3)

다. 국제표준을 수용하여 보호 계전기 전자파적합성 기준 신설(안 제6조 제4항, 별표 3의4)

※ 고시 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 알림소식 → 고시·공고 → 전자파적합성 기준 및 시험방법(신규,NEW) → 전자파적합성 기준